[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00600062] www.ajiyafruit.com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0.09.15]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06.11]

아지야과일가게

정보공개서

(주)월배농산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월배농산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매천동, 북대구농협공판장 중매인8번)

TEL: 053-311-7589 가맹사업부 전화: 053-311-7589

FAX: 053-323-7559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지서식1호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지서식2호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지서식3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①별첨1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 ②별첨2 (설비 및 집기구입 비용의 내역) 조 정 위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③별첨3 (원·부재료의 초도 및 계속 거래품목 구입비용)
- ④ 별첨4 (간판 및 사인물 구입비용)
- ⑤별첨5 (오픈행사 비용)
- ⑥별첨6 (가맹본부 재무제표)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이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 및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아지야과일가게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매천동, 북대구농협공판장 중매인8번)					
(주)월배농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산푸드	2007-06-11	2007-06-15 김준호		053-311-7589		053-323-7559	
	법인등록번호	170111-0333948 사업자등		자등록번호 50		4-81-7213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북구 매천로 18길 구농협공판장 중매(
임원	김준호	아지야과일가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춘호	053-311-7589	053-323-7559
관계	이름/상호이	EA 영업표제DE N	1EDIATION AGENC	·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매천동,
			북대-	구농협공판장 중매연	인8번)
임원	최두형	아지야과일가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준호	053-311-7589	053-323-755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해당없음	_	_		_	
기업을 인수함	에이하급	_	_	_	_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해당없음	_	_	_	_	
일부를 인수함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케다어ㅇ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_	_	_	_	

다른 기업이	웨다어오	_		_	
가맹본부를 합병함	에 당없음 	_	_	_	_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명칭	상호	상표
아지야과일가게	아지야과일가게 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아지야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별첨6]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564,782	287,933	276,848	2,682,467	26,811	21,781
2022년	499,700	194,504	305,195	2,617,347	34,240	30,191
2023년	569,016	216,733	352,282	3,278,231	50,018	49,217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별첨6]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본 가맹사업관련 매출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추정치를 기재 하였습니다(구매대행비, 창고비만 수령)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十正	'문 이름 본격제		기간 직위		담당업무		
	김준호	대표이사	2022.04.07~현재	(주)월배농산푸드 대표이사	사업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두형 사내(111110111	2012.04.07~현재	(주)월배농산푸드 사내이사	관리		
		사다이사	2014.03.03.~202 2.04.06	(주)월배농산푸드 이사	사업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_	-	_	_	_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Al a	상근	비상근	역전구(8 <i>)</i>
*2023년 12월 31일	1	1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을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아지야과일가게 가맹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국공장거리소장된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	권리내 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출원일자:	출원번호 :		
상표	아지야	상품	2007.04.10	4020070019092	김봉균	2028.03.26.
0 H		사인물	등록일자:	등록번호:	급증진	(2028.03.26.)
			2008.03.26	400741781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2007년12월11일
 (직영점 시작한날: 2016년 05월 17일)

2.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지야과일 가게]	아지야과일가 게	김봉균	2007.12.10~2015.0 4.20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3 4단지상가 103호
[아지야과일 가게]	아지야과일가 게	김봉균	2015.04.20.~2020. 03.09.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25, 209동 403호
(주)아지야	아지야과일가 게	최두형	2020.03.10. ~ 2022.04.06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매천동, 북대구농협공판장 중매인8번)
(주)월배농 산푸드	아지야과일가 게	김준호	2022.04.07. ~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매천동, 북대구농협공판장 중매인8번)

FAIR

3. 해당 가맹사업 업종하고고저 거래 조정의

		h A 3 in modificate IR
영업표지	CODE A CALD TO A DE MEDIATION	20 CO
아지야과일가게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UVV자들기계	농수산물	과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1	21	0	21	21	0	18	18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19	19	0	19	19	0	16	16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2	2	0	2	2	0	2	2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21	0	0	0	0	21
2022	21	0	0 0	0	0	21
2023	21			K X O 1	0	18
L'TOO'III-LOLI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l맹점사업지	l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8	563,615	54,898	1,087,787	101,324	87,443	7,287	* 3 곳 산정제외
서울	0							

부산	0							
대구	16	563,615	54,898	1,087,787	101,324	87,443	7,287	* 1 곳 산정제외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2							* 5곳 미만 * 2 곳 산정제외
경남	0							
제주	0							

가맹점 매출액은 POS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영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 위 매출 기재 내역은 가맹점이 배달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달 영업 매출까지 파악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가맹점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8개	3,77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 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 해당 사항 없음(프랜차이즈보증보험 제도 이용)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월배농산푸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 국 공 정 거 ^{간맹점사업자} 위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_	_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지야과일가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점포면적33㎡을 기준하여대략 일금사천칠백만원(₩47,000,000)이 필요 하다고 추정 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vat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 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KOREA	₩11,000,000원 -공정거리 2 FAIR TRADE MEDIATIO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 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및 가맹사업 시스 템 가입을 위하 여 소요되는 소 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전교육비	무료		

- *상기의 비용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 개점 이전 해약 시에는 전항의 **가맹비는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vat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十正	ਪ ੀ ਜੋ		한편조선	없는 사유
	1. 가입비	원칙적으로는 없음	가맹점 영	가맹점 오
	2. 양수자 자격 심사	1. 양도자가	업시작 이	픈 및 가
기맹비 기맹비	비	미경과계약일수에대한	후반환 안	맹사업 시
71601	3. 양수 가맹점 운영을	가맹비를 반환 받을 시에는	됨 단 오	스템 가입
	위한 정보·자료 제공	남은기간에 상응 하는 비율의	픈 전 해	을 위하여
	및 인력지원의 대가	가맹비.	약 시 위	소요되는

		다만, 2. 양수자가 원할 시에는 계약기간 및 제반사항 신규조건과 동일	약금과 상 계처리 후	소멸성 비 용
교육비	개점전교육비	신규 조건과 동일	반환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 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 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 공하는 금액	₩ 5,000,0000 (vat없음)	계약 종료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 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합계	₩16,000,000
가맹비	₩11,000,000
보증금	₩5,000,000 (VAT없음)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아지야과일가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품목의 내역은 [별첨1~5]와 같습니다. $(33 m^2(10 \%))$ 기준, 단위천원

품목	금액(VAT포함)	면적 3.3㎡당 금액
인테리어 공사비	12,000	1,200
설비 및 집기	10,000	1,000

원·부재료의 초도 및 계속 거래 품목	5,000	-
간판 및 사인물	2,000	3,630
오픈행사비	2,000	_
총계	31,000	3,1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수비		
(인테리어 시공을 가맹점주가 직접 할	1㎡당 ₩33,000원	_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마. 금전지급 시기 및 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계약금)	총예치 대상 가맹금 전액	계약 체결 시	
초도물품비용	물품비용 전액	오픈 2일전까지	

KORFA FAIR TRADE MEDIATION AC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 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업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 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을 분할 예치 할 경우에도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예치금 은 귀하가 예치하여야 할 예치 대상 가맹금 총액으로 기준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후에서 7일 이내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7일 후에서 가맹점 오픈 이전까지	예치금의 50%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아지야과일가게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점의 점포 규격 기준은 편도2차선이상의 대로변 1층에		
	위치한 33㎡이상의 면적을 가진 점포를 가맹점주가 확보		
	하셔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	3)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		
	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		
	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 할 가맹점사업자의 자격과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 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1~5]와 같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 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대상자	금 액(VAT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구매대행비	대 대 행 수 료	가맹본부	₩550,000	매월 15일이전	실비이므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이므로 반 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1회 당 <u>₩1,100,000원</u>	개별 청구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 으로 실시될 경 우에 실비로 청 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 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당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판촉 행사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 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 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 하여 결정	개별 청구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 음
광고 분담비	또 역 로 되 똥 _자 지 위 행 ⁸ 는 단 시 는 광	가맹본부	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부 청구(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개별 청구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 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 선 비용	자율선택	KOREA FAIR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TRADE MEDIATION AGEN	CY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사항 없음(직전사업연도 차액 가맹금 없음)
-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나.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 경업금지 기간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아지야과 일가게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아지야과일가 게와 동종 영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에게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아지야과일가게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아지야과일가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로부터 지원 받은 당사 소유의 집기등을 계약 종료후 7일내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 4) 당사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운영에 관련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는 계약 종료후 당사에 반납 하거나 당사의 승인 하에 폐기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고객에게 판매 하는 과일)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과일의 특성 상 유통 가능한 상품만 협의하여 반품 가능 합니다.)

바.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자세한 품목의 내역은 [별첨1~5]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개점 이후에도 추가로 물품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거 래물품의 공급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개점이후 관계법령 및 위생관리,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교체 및 수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설비,집기 품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 원)		7 🗆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十七		
_	-	_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기재생략, 과일 소매업)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_	_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급해	비고
-	_	The state of the s		1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라	비고
_	-	_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아지야과일가게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아래의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판매.제공 허용되는 상품(메뉴)의 목록 (단위 : 원 vat포함)

번호	상품명칭	규격	권장단가	단가 통지 방법
1	국내산 계절과일	BOX 또는 개당		가맹본부 홈페이지
2	수입산 과일	36X	공급시 가맹본부가	및
3	쌀	1포(10, 20kg)	결정하여 통지 함.	당일 거래명세서 기장
4	된장	BOX 또는 개당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 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표에 기재된 상품 내용과 권장가격을 가맹점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용도 외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및 가맹 본부가 공급을 중단한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 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혼인 남중 교계	가맹본부	계열회사	
아지야과일가게와 동일한 업종	아지야과일가게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웃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재조정F사유TRADE MEDIATIO)	N AGEN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서면 통지후 영업지역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_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홍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_	-	_	_
- 본다인 	_	-	_	_
홈쇼핑	_	-	_	_
전화권유판매	_	-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상기의 영업지역은 off-line에서 한정하여 부여되며 on-line 통신판매는 금지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라도 **귀하에게 사용 허락한** 지식재산권 **이외의** 당사가

보유한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향후 다른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영업지역은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고 당사가 온라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통신판매에는 적용 하지 않으며, 당사의 다른 브랜드와도 무관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2023	100%	0%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아지야과일가게의 최초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갱신 시 에는 2년씩 연장 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예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한 하기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영업지역 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3조2항 및 3항	25조	각호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소2양 및 3양	및3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4조3항	1호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工00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	4조4항		
하거나 양도한 경우	4246		
가맹점사업자가 구매대행비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15조		
이상 연체한 경우	1511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	16조		
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0元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1항 및 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경업	18조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元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	20조		
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20公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			
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	21조 1항~4항		
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잦은 가격변동	
의 행위등으로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아지야과일가게 명성	21조 5항
을 현저히 저해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	
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	23조
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00.7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	
하는 경우 및 가맹점 환경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하지	27조 1항 ~ 3항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	27.T. 6.5t
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28조
않는 경우	20:12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31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	30조 2~5항
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001 2 0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	30조 7항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	35조 1항
	Control Business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 25조 21호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	31조 1항 2호
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아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31조 3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 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밖에 계약내용을 수정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의 경우 최소 10일전, 해지의 경우 최소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계약 수정 또는 해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해지의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변경 내용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 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할 경우 당사와 신규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인테리어 및 설비 구입 제외)으로 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양도에 관한 당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관례에 따라 보증금 및 잔여 가맹비를 양 도자에게 지급하고 양수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잔여기간을 승계하거나 신규계약

자의 지위가 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임이 증명 되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승계를 승인합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소비자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제한 고 저 거리 주 저 의

당사는 아지야과일가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00 ~ 22:00 (12시간)	휴무일 가맹점 자율 운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 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 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 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비용 및 각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통지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 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 3) 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는 100% 당사가 광고비용을 부담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위약벌 등)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현금 지

급 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일백만 원** (₩1,000,00원)을 현금 지급 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 하거나 아지야 과일가게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이백만원(\varphi2,000,000원)**을 현금 지급 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일십만원(₩100,000원)씩 "갑"에게 현금 지불 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전항의 사유외에 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이백만원(₩2,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위약벌(금)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VAT포함)
가맹희망문의	- 전화상담(053-311-7589)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_	
1차 상담	- 전화상담 및 본사방문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 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입지조건선정	본사 매니저 및 전문가의 입지조건 검토 (상권분석, 인구밀집도 조사)	_	
가맹 계약 및 계약 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D-45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D-44~30	 12~14 페이지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촉/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1)-/4~/8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 면협의	D-27~25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D-24~5	
기자재 및 소품설 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간판설치	D-24~5	
교육	- 서비스 교육 - 조리담당 및 점주교육	D-7~4	
초도물품 구입	영업개시에 필요한 자재 구입	D-3~2	
오픈 리허설	오픈 리허설(시식회) -가까운 지인 및 맛집 동호회 인원 을 초대해서 시식회를 가짐	D-1	
오픈	오프닝 행사 (본사 매니저와 가맹점주의 협의 후 결정)	D-day	
	합계	45일	

상기의 기간과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의 구입 소요비용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 치이므로 점포 크기와 물가변동에 따른 ±의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시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 부 부담 비용비 율	지급절차	비용부 담 제외사 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맹시압의 통원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 지지 전로 경기선 : 20% 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 는 점포 경 가선 는 점포 경 개선 보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취 → 90일 이내에 기만보부부러액을 기맹정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기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취 → 3차에 걸쳐기만본부부담액을 분할 지급	O 사건의 공화관법 제조규에의 부제사해시에는 물 2 2 기가 되었다.	아점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 도표함되는 경우 가맹본 부 당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 자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가능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 맹점 부 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아지야과일가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방식	교육 장소	교육내용	교육이수 기한	비고
서비 스 교육	24시간	현장 실습	본사 또는 가맹점	고객응대 요령 매장 진열 교육	가맹계약체 결일로부터 1개월내	필수 교육
과일 선별 교육	24시간	집체 이론, 현장 실습	본사 또는 가맹점	과일의 품질 측정 과일의 특성	가맹계약체 결일로부터 1개월내	선택 교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효율적인 아지야과일가게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방식	교육 장소	교육내용	교육이수 기한	비고
수시 교육,	4	현장 실습		사업운영에 필요한 의견수렴.통지사항, 신제품 소개	교육일로부터 15일전 통보	필수 교육
明明	8	집체 이론 현장 실습	본사 또는 가맹점	점주의 요청으로 인한 특별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	상호협의	선택 교육

재교	24	현장	교육미비 및	본사지정일로	필수 교육
육		실습	운영미비가 있을경우	부터	
		모의기	실시	15일내	
		구실습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40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4		수시
특별 교육	8	₩1,100,000	필요시
재교육	보충에 필요한 시간	필요시 협의 함	필요시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TRADE MEDIATION AGENCY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_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거리조정원 비교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첨1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설비 및 집기 구입비용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3 원·부재료의 초도 및 계속 거래품목 구입비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간판 및 사인물 구입비용

별첨5 오픈행사 비용



별첨6 가맹본부 재무증명

